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

제 출 일 자 : 2003. 3. 4.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개정이유

2003년도 적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자동차세 추징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제1항)

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조문 정비(안 제6조)

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조문정비(안 제9조제2항)

라. 기타 법률변경에 따른 다른법 적용조항 변경(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

마.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을 “2002년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토록 기한 연장 함(안 제25조제1항)

3.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9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절차이행

가. 입법예고 : 2002. 12. 19 ~ 2003. 1. 10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공고(경남일보)

다. 의견수렴사항 : 접수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6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생 략)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 4.(생략) ③(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단서 삭제> 1. ~ 4.(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 4.(생략) ②(생략)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단서 삭제> 1. ~ 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 2. (생략)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 2.(생 략) ②(생 략) 〈신 설〉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 1. ~ 2. (현행과 같음)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2005년 12월 31일----------. 1. ~ 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